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53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Paper Based Test),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5.12.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5.12.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그 소명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2·3급)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